

유학생주택종합보상

~배상사고에 대비하고 임대차 계약 시 연대보증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일본에서는 방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유학생주택종합보상은 학교 관계자가 연대보증인이 될 경우 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대보증인: 유학생(임차인)이 방세를 내지 않을 때 유학생 대신 임대인에게 방세를 지불하는 사람. 연대보증인이 방세를 대신 지불한 경우 유학생(임차인)은 연대보증인에게 방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1. 유학생주택종합보상의 내용

이 제도는 해외여행보험(①유학생배상책임보험 ②상해후유장애보험)과 보증인보상기금(③보증인보상)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상의 개요’ (P.5)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① 유학생배상책임보험



유학생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사고> 또는 <유학에 필요한 숙박·주거시설 사용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려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방에 끼친 손해의 대상은 화재, 폭발, 파열, 누수에 한합니다.

② 상해후유장애보험



유학생 본인이 <교통사고나 스포츠 등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일반적인 부상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보증인보상

유학생(임차인)의 방값 체불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아 지불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해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주)보상기간 중에 물건의 해약·명도를 완료한 경우에 한합니다.

※해외여행보험: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계약자가 되어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와 포괄협약을 체결한 보험입니다.

※보증인보상기금: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2. 보상대상자

○해외여행보험(유학생배상책임보험·상해후유장애보험): 유학생

유학생주택종합보상협력학교인 일본의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전문과정(전문학교) 및 법무대신의 고지에 정한 일본교육기관에 입학한 자 및 입학이 확실한 자로, 원칙상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보증인보상기금(보증인 보상): 임대차 계약의 연대보증인

유학생이 민간아파트 등에 입주할 때에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인 기관·개인

- ①대학 등·일본어교육기관 및 그 직원(유학생센터장·유학생과장 등)
- ②지역의 국제교류협회·센터 등

3. 보상기간

보상 기간은 유학생의 체류 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이 됩니다.

단, 이미 유학생주택종합보상에 가입 중인 경우 그 보험의 보상 기간 만료일까지 가입 수속을 하면 6개월간의 보상 기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시작일(개시기)	보상 종료일(종료기) ^(※3)
<신규가입>	가입수속을 한 다음날 ^(※1) 임대차계약개시일	시작일전날의 오후 12시까지
<계속가입>	원보상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2) 오전 0시부터	

(※1) 유학생이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보험료등 부담금을 입금하고 학교로부터 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다음날

(※2) 유학생주택종합보상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자가 보상기간만료 전에 계속을 위해 가입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유학' 재류자격에 따른 재류기간이 끝났거나 졸업 또는 퇴학 등으로 학교에 재적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증인 보상이 불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종료되니 해약 수속을 마쳐 주십시오.

<예>

보상기간	보상 시작일	보상 종료일
1년간	2018년 3월 1일 오전 0시	2019년 2월 28일 오후 12시
2년간	2018년 3월 1일 오전 0시	2020년 2월 29일 오후 12시
6개월	2018년 3월 1일 오전 0시	2018년 8월 31일 오후 12시

※보상기간은 남은 재류기간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1년이나 2년의 보상 기간 중에 다시 가입하여 보상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 남은 재류기간이 1년 이내 . . . 보상기간 1년간 가입
- 남은 재류기간이 1년 초과 . . . ①보상기간 1년간 가입 후 6개월 연장
또는
②보상기간 2년간 가입

4. 보험료 등 부담금

보상기간	1년간	2년간	6개월(연장) ^(※5)
보험료등 부담금 ^(※4)	4,000엔	8,000엔	2,000엔

(※4) 보험료 부담금은 해외여행보험(유학생배상책임·상해후유장애) 보험료와 보증인보상기금 가입금을 합친 것입니다. 유학생이 부담합니다.

(※5) 기존 가입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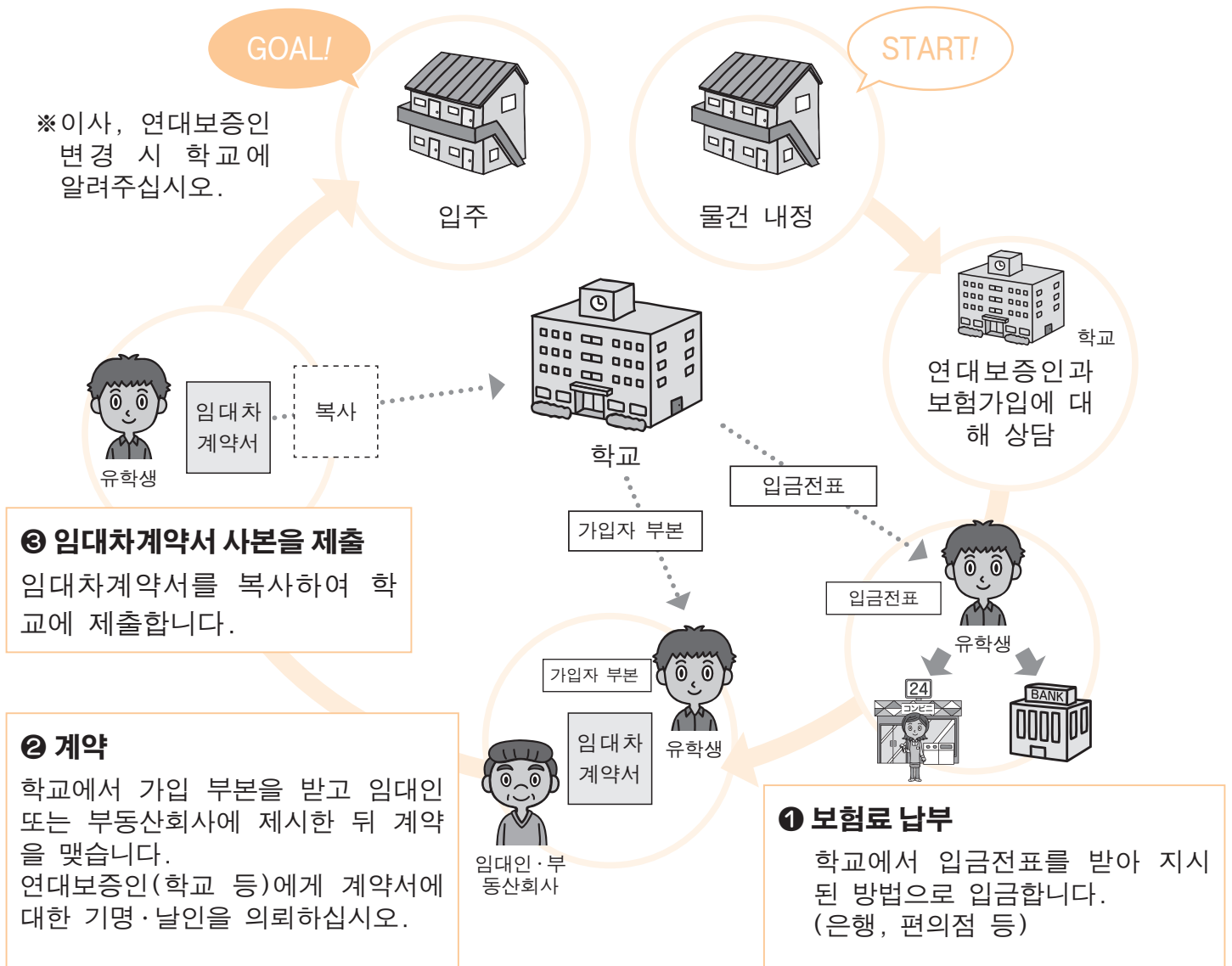
5. 보험 금액 · 보상 금액

보상내용	보상대상자	보험 금액 · 보상 금액(지급 한정액)
① 유학생배상책임	유학생	1사고 5,000만엔한도 ^(※6)
② 상해후유장애		240만엔한도
③ 보증인보상	보증인	30만엔한도

(※6) 사고 1건당 상한 금액입니다. 면책금액(피보험자의 자기 부담 금액)은 0엔입니다.

6. 신청방법

이 제도에 대한 신청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7. 가입시의 주의점

① 신청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가입해 주십시오.(고지 의무)

가입시에는 가입의뢰서 겸 지불취급표의 기재사항이 옳은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보험금을 지불할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령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보험금을 지불할수없는 때가 있습니다.

- 보상기간중, 피켓등 등산도구를 사용하는 산악등반, 루지, 봅슬레이, 스킨레톤,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탑승, 초경량동력기(모터행글라이더, 마이크로라이트기, 울트라라이트기 등을 말하며, 패러플레인 등의 낙하산형 초경량동력기를 제외합니다.) 탑승, 자이로플레인탑승, 그리고 이와 유사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경우
- 보상기간중에 항공조종을 하는 경우 (하지만 업무상의 항공기 조종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 보상기간 중에 자동차 등 승용도구를 이용하는 경기, 시운전, 경기장에서의 자유 주행 등을 하는 경우
- 보상기간 중에 위험한 업무 (예를 들어,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등)에 종사하는 경우

② 다음 사항은 양해 바랍니다.

- 가입할때 여권제출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귀국예정일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보험기간의 연장신청은

받아들일수 없을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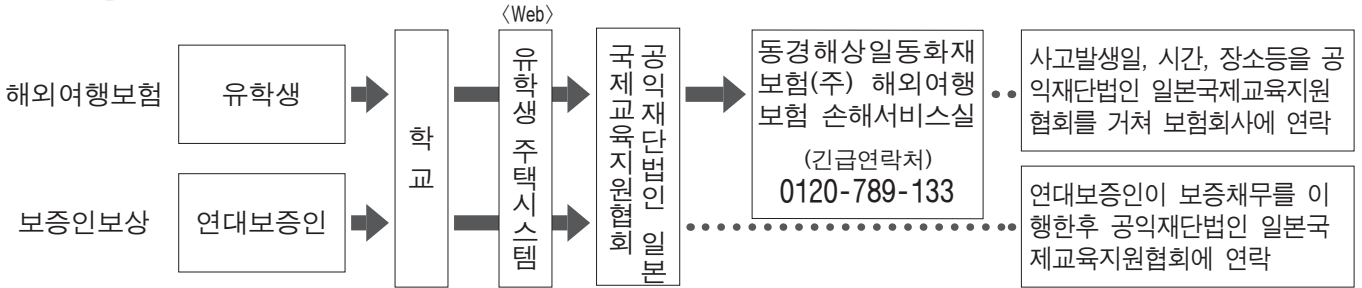
③ 귀국예정일이 없는 분이나 일본의 영주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청구시에 주거상황등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④ 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했을 경우의 취급에 대하여:인수보험회사가 파산했을때에는 보험금, 환불금등의 지불이 일시 동결되거나 금액이 삭감될수 있습니다.또한,경영이 파산했을때 이 보험은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보상대상으로 되어 보험금,환불금등은 원칙상 80% (파산보험회사의 지불정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때까지 이 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100%) 까지 보상할수 있습니다.

⑤ 계약내용 및 사고보고내용의 확인에 대해서:손해보험회사간에는 손해보험등에 대하여 부정계약으로 인한 사고유발을 미리 방지함과 동시에 보험금을 적당히, 신속히. 확실하게 지불하기 위해 계약체결 및 사고발생시 동일피보험자 혹은 동일한 사고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상황이나 보험금청구상황은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계약정보등에 의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내용은 상기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의문점은 인수보험회사에 조회하시기를 바랍니다.

8. 사고발생시의 대처



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① **사고통지:**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사고일, 시간, 장소, 피해자이름, 사고상황 등을 30일 이내에 학교를 경유해서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배상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협상을 하는 「합의협상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담당부서의 조언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되는 분) 본인이 피해자와 합의협상을 진행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승인없이 합의했을 경우, 합의금전부 혹은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불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 학생이 일본어로 의사거래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및 보험회사와의 창구는 반드시 학교가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 가입후의 주의점

① **통지업무 (가입후, 계약내용에 변동이 발생했을 · 보험회사로 연락해야 할 의무):** 가입후, 계약내용에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학교,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또는 인수보험회사에게 통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지가 없는 경우, 보험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상기간 중에 위험한 업무 (예를 들어,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등)에 종사하게 된 경우

② 퇴학, 출국으로 인하여 해약하는 경우, 학교 또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통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기타 주의점

이 팸플릿은 해외여행보험 · 보증인보상기금의 내용에 대해 소개한 것입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시에는 반드시 「중요사항 설명서」를 잘 읽어 주십시오. 궁금하신 점 등이 있는 경우에는 8페이지에 있는 계약자 또는 인수 보험회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해외여행보험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협력학교에 재적하고있는 유학생이며 보증인보상기금에 가입하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해외여행보험포괄협약입니다. 보험증권을 청구하는 권리,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권리등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게 속합니다.

<보험금의 지불대상이 된 사고 예>

() 안은 지불금액

- 세탁기 급수 호스가 빠져 이웃집이 수해를 입음(677만엔)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접촉해 손상을 입음(21.6만엔)
- 부엌에서 조리 중 냄비 기름이 인화되어 천장 등을 소실(105만엔)
- 동굴에 의해 급탕기가 파열(7만엔)
- 가스 폭발로 인한 욕실 보일러 파열(12.6만엔)
- 교통사고로 인한 실명(156만엔)*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과 접촉해 다치게 함(601만엔)

*상해후유장애보험금. 기타 사례는 모두 유학생배상책임보험금.

■ 해외여행보험 (보상의 개략)

보상항목	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	지불하는 보험금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주요한 경우
유학생 배상책임 보험금	<p>피보험자 (보험대상으로 되는 분=유학생 본인) 이 보상기간 중 일상생활에서 기인하는 사고 또는 주택(*1)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 때문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품(*2)에 손해를 입히는 등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p> <p>(*1) 주택이란?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의 유학 또는 여행을 위한 숙박시설 혹은 주거시설을 말합니다.</p> <p>(*2) 렌트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접 임대한 여행용품·생활용품, 숙박시설의 객실, 숙박시설의 객실내의 동산 (금고열쇠를 포함합니다.), 주거시설 (실내의 동산을 포함합니다.) (*3)을 포함합니다.</p> <p>(*3) 주거시설의 손해 중에서 다음의 손해에 대해서는, 화재, 폭발, 파열 및 누수, 방수 또는 물이 새는 것에 의해 끼친 손해만이 지불 대상이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또는 맨션의 전체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 실내 (실내의 동산을 포함합니다.) 의 손해 · 방 이외의 손해 	<p>손해배상 금액 1회 사고에 대해 유학생배상책임보험금액(P.3 참조)이 한도가 됩니다.</p> <p>(주1)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인수보험회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p> <p>(주2)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유익한 비용, 인수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p> <p>(주3) 피보험자가 책임무감당자인 경우, 그 책임무감당자의 행위로 인해 친권자 등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도 지불 대상이 됩니다.</p>	<p>예를 들면, ①전쟁, 기타 변란 (*4) ②방사선 조사, 방사능오염 ③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의 고의 ④직무수행, 또는 아르바이트업무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업무상의 배상책임) ⑤항공기, 선박(*5), 차량(*6) 총기의 소유·사용·관리로 기인하는 배상책임 ⑥수탁품에 관한 배상책임((*2)에서 포함되는 물건은 지불 대상이 됩니다.) ⑦친족에 대한 배상책임</p> <p>(*4) 전쟁위기 등 면책에 관한 일부 수정 특약이 세트 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행위는 지불 대상이 됩니다.</p> <p>(*5) 요트, 수상오토바이는 보험금의 지불 대상이 됩니다.</p> <p>(*6) 렌터카를 포함합니다. 또한 자전거, 골프장의 카트, 레저목적으로 사용하는 스노모빌 등은 보험금의 지불 대상이 됩니다.</p>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p>피보험자(보험대상자=유학생 본인)가 보상 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부상을 입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는 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 발생일로부터 181일째에 해당하는 날의 의사 진단에 따라 후유장애 정도를 인정하여 상해후유장애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p>	<p>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상해후유장애 보험금액(P.3 참조)의 4%~100% 지급액 한도는 보험기간을 통한 합계 상해후유장애 보험금액입니다.</p>	<p>예를 들면, 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보험금 수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③전쟁, 기타 변란 (*7) ④방사선조사, 방사능오염 ⑤무면허·음주·마약 사용 운전 등으로 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부상 ⑥싸움과 자살, 범죄행위 ⑦뇌질환, 심신상실, 임신, 출산, 조산, 유산으로 인한 부상 ⑧여행개시 전 혹은 여행이 끝난 후에 발생한 부상</p> <p>(*7) 전쟁위기 등 면책에 관한 일부 수정 특약이 세트 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행위는 지불 대상이 됩니다.</p>

■ 보증인보상기금(보상의 개략)

보상금을 지불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p>임차인인 유학생이 임대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행되지 않아 보증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불합니다.</p> <p>(1) 집세 또는 임대료 및 관리비지불 (2) 셋집등의 수리 혹은 원상복구 비용의 납부 (주의) · <u>보상기간에 해당 대차 물건의 해약 명도를 마친 경우에 한합니다.</u> · 유학생과 연락이 가능한 동안은 먼저 보증인이 유학생에게 지도해 주시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구상권에 관해] 보증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한 유학생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의 채권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양도된 것으로 하고, 동협회에서 해당 유학생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보증인은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유학생의 행방 조사에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p> </div>	<p>아래에 제출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p> <p>(1) 임차인에 해당하는 유학생이 임대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이라고는 인정될 수 없는 다음에 나열된 손해 가. 수도광열비 나. 반상회비 다. 기타,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불할 의무가 없는 책임이행에 의한 손해</p> <p>(2) 보증인, 임대인 혹은 이분들의 대리인의 고의적인,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p> <p>(3) 집세등의 공정 타당하지 못한 인상, 환경악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등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 불이행에 의한 손해</p> <p>(4) <u>보상기간이 개시되었을때, 집세등의 지불연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끼친 손해</u></p> <p>(5) 보상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도 아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보증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p> <p>(6)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 연대보증인, 협력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을 변경 또는 전대차계약했을 경우</p> <p>(7) 유학생 주택종합보상 신청 시 유학생, 보증인 또는 이들 대리인에게 사기 행위가 있었던 경우</p>

중요한 사항설명서(계약의 개요 주의환기정보에 대한 설명)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개요 주의환기정보에 대한 설명

- 본 설명서에는 가입하시는 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자(공익재단법인)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전달해 드린 보험약관에 의하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본 설명서 P.8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개요는 가입하시는 보험의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특히 중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 주의환기정보는 가입하실 보험을 신청하실 때, 고객님의 불이익이 되는 사항 등, 특히 주의하셔야 할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팝플렛 및 가입자 보관용 등, 가입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관하십시오.

계약개요설명

1. 상품구조 및 인수조건등

(1) 상품구조

이 보험은 (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를 계약자로 하고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협력교에 재학하는 유학생 중 보증인 보상기금에 가입하는 분을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하는 포괄계약입니다. 보험증권 청구권리, 보험계약 해약권리 등은 (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보유합니다.

이 보험의 명칭, 계약자로 되는 단체, 가입하는 피보험자의 범위등에 대해서는 1, 2, 8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내용 보험기간(보험계약기간)

①주요한 지불사유(보험금을 지불하는 주요한 경우), 보험금의 지불액, ②주요한 면책사유(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주요한 경우), ③보험기간(보상기간) 등에 대해서는 1페이지~3페이지, 5페이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 인수조건(보험금액등)

이 보험의 인수조건(보험금액 등)은 사전에 정해지 계약코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코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료 보험료납부방법

보험료는 가입하는 계약코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보험료납부방법에 대해서는 3 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3. 만기환급금 계약자배당금

이 보험에는 만기환급금·계약자배당금은 없습니다.

주의환기정보에 대한 설명

1. 고지의무 통지의무등

(1) 가입 시 주의사항

- 보험제도는 다수의 사람이 서로 보험료를 내어 호상지간에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보험금등을 지불하는 위험도가 높은 분이 무조건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공정성을 잃게 됩니다.
- 따라서 가입 시 인수보험회사에 중요사항을 고지하실 의무(고지 의무)가 있습니다.(인수보험회사에 고지 수령권이 있음) 고지 의무 내용은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만약, 고의적인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실을 고지하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이내라면 인수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 명의로 가입을 해약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을 해약한 경우는 비록 보험금을 지불하는 사유가 발생한다 해도 보험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단, 「보험금지불사유의 발생」과 「해약의 원인으로 된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불의 대상이 됩니다.
- 또한,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이외에도 계약체결상황에 따라 보험금을 지불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가 곤란한 질환·증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등, 고지의무 위반내용이 특히 중대한 경우,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보험금지불을 보험금지불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2) 가입후의 유의사항(통지의무등)

보상기간 중에 위험한 업무(예를 들어,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등)에 종사하게 된 경우의 통지의무와 통지의무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수속절차등에 대해서는 4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이나 수속이 등이 없으면 가입을 해제하거나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다음번의 계약갱신인수

보험금청구상황등에 따라서는 이후의 보험갱신이 거절되거나 인수조건을 제한할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2. 책임개시기

보험책임은 원칙적으로 2페이지에 기재한 보험기간(보상기간) 개시기부터 시작합니다.

3. 주요면책사유(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등

5페이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되었을때의 취급

인수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되었을때에는 보험금, 환급금등의 지불이 일시적으로 동결되거나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5. 개인정보취급에 대해서

7페이지의「개인정보취급에 대해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6. 새로운 보험계약으로의 변경에 대해서

현재의 가입을 해약, 감액하는것을 전제로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검토할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①현재의 가입을 해약, 감액하는 경우의 불리한 점
 - 대부분의 경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이 됩니다.
- ②새로 보험계약에 가입하게될 경우의 주의점
 - 새로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고지할때, 고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게 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가입이 해약되고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새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책임개시기전의 사고등은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7. 피보험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한 해약

피보험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그 피보험자에 관한 가입을 해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 및 수속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팸플릿 등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8. 보험금의 청구·지불에 대하여

(1)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수속 등

사고 발생 시 수속 절차는 팸플릿 등을 참조하십시오.

(2) 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금의 청구에 있어서는, 약관에 정해진 서류 이외에, 이하의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 증명서, 사고발생 장소 관리자의 사고 증명서 등 사고의 발생 또는 사고 상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거
- 주민표, 호적등본 등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의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또는 증거
- X-ray·MRI 등의 상해 또는 질병의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거
- 영수증 등의 피해가 발생한 물건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가 발생한 물건의 사진 및 견적서 등의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
- 기타 보험계약 등의 보험금 지불 내용을 기재한 지불내역서 등,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서류 또는 증거

(3) 대리인으로부터의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며, 보험금의 지불을 받아야 하는 피보험자가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 가족 분들 중에서 인수보험회사의 소정의 조건을 채우는 분이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팸플릿 등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4) 대리인으로부터의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가 배상책임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비용보험금을 제외한, 다음의 ①에서 ③까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손해배상으로 변제를 실시한 경우
- ②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불을 승낙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③피보험자의 지시에 의거하여 인수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인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는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에 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및 동경해상그룹 각 회사는 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과거에 취득한것을 포함합니다.)를 보험인수판단, 본 계약의 관리·이행, 부대서비스제공, 기타 보험·금융상품등의 각종 상품·서비스의 안내·제공, 앙케이트등을 진행하기 위해 이용하는이외에 아래①부터⑤까지의 경우에 이용·제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등의 특별한 비공개정보(민감정보)의 이용목적은 보험업법시행규칙에 의해 업무의 적절한 운영확보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업무위탁처(보험대리점을 포함), 보험중개인, 의료기관, 보험금의 청구, 지불에 관한 관계기관, 금융기관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함
- ②계약체결,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금지불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른 손해보험회사, 동경해상그룹내부의 다른 보험회사, 일반사단법인일본손해보험협회등과 공동으로 이용함
- ③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과 동경해상그룹 각 회사간 또는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과 그 회사의 제휴기업등사이에 상품·서비스등의 제공·안내를 위해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
- ④재보험인수회사등에서 재보험계약의 체결, 갱신·유지·관리, 재보험금지불등에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재보험인수회사에 제공함
- ⑤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소유권유보등의 담보권자의 담보권설정·변경·이전등과 관련된 사무적인 수속, 담보권의 유지·관리·행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그 담보권자에게 제공함

* '도쿄해상그룹' 은 '도쿄해상홀딩스 주식회사' 산하의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 닛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도쿄해상일동 안심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이들 회사의 계열사를 포함합니다.

동경해상그룹 각사의 범위 및 제휴처 기업 등의 일람, 동경해상그룹 내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관리책임자,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 일람,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및 동경해상그룹 각사)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는,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홈페이지(<http://www.tokiomarine-nichido.co.jp/>)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입내용확인사항 (의향확인사항)

본 확인사항은 만일의 사고발생시에 안심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가입하는 보험상품이 고객의 기대에 맞는 내용인가, 또는 신청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사항을 올바르게 기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음의 각항 질문사항에 대해 재차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인 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1. 보험상품이 다음과 같은 면에서 고객의 기대에 맞는 내용인가를 이 팜플렛 (중요사항설명서를 포함함)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가입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 보험금의 지급 사유 (주요계약, 특약을 포함합니다.), 지급하는 보험금
- 보험금액 (계약금액)
- 보험기간 (보험의 계약기간)
- 보험료

2. 보상기간 중 아래의 운동 등을 실시한 경우는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운동등을하는 동안에 일어난 사고는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보험금이 지불안될수가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혹은 인수보험회사로 조회하시기를 바랍니다.

- 산악등반(핏켈, 아이젠, 자일, 해머등의 등산용구를 사용하는것)
-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탑승, 초경량동력기 (모터행글라이더, 마이크로라이트기, 울트라라이트기등) 탑승, 자이로플레인탑승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한 운동
- 다음의 승용기구에 의한 경기·경쟁·홍행 (어느운동도 연습을 포함함), 또는 시운전
자동차, 모터사이클(배기량 50cc 이하), 고 카트, 모터보트, 기타 이와 유사한 승용구
- 항공운송사업자가 노선을 정하고 운행하는 항공기이외의 항공기조종 (단지, 업무상의 항공기조종은 제외함)

3. 중요사항설명서 (계약개요·주의환기정보) 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다가?

특히, 「주의환기정보설명서」에는 「주요면책사유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주요한 경우) 등」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 「고지의무·통지의무 등」가 기재되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p>●유학생배상책임보험, 상해후유장애보험 관련</p> <p><인수보험회사>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 공무제2부 문교공무실 우편번호 102 - 8014 도쿄토 지오다쿠 산방초 6-4 TEL : 03-3515-4133 FAX : 03-3515-4132 http://www.tokiomarine-nichido.co.jp/</p>	<p>●보증인 보상 관련</p> <p><계약자>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사업부 보험·보상과 우편번호 153 - 8503 도쿄도 메구로구 고마바 4-5-29 TEL : 03-5454-5275 FAX : 03-5454-5232 http://www.jees.or.jp/</p>
사고의 연락·긴급시의 경우에는	<p>동경해상일동화재주식회사</p> <p> 0120-789-133</p> <p>접수시간: 24시간·365일</p>	<p>시간대에 따라 이용방법이 다르므로 유의해 주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의 영업시간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상기 프리다이얼에 전화를 겁니다. ②음성안내에 따라 희망하는 청구수속을 전화기 푸 시버튼으로 선택합니다. ③담당 창구에 전화가 연결되고 접수를 합니다. ●왼쪽에 기재한 시간대 이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상기 프리다이얼에 전화를 겁니다. ②담당 창구가 영업시간 외이므로 도쿄해상일동 해외 종합서포트 데스크(인터내셔널 어시스턴스사)에서 접수하고 청구수속 안내를 합니다.
자정 분쟁해결기관	<p>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p> <p>0120-107-808 휴대폰, 차량전화, PHS, 위성전화는 03-3255-1306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토·일·경축일은 휴일입니다.)</p> <p>보험회사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손해보험상담실」로 상의할수 있습니다. 또한, 알선·조정기관을 소개해 드립니다.</p>	